

제 258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1.9.7.)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 토 보 고 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종호]

목 차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6
3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0
4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5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6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7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8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11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1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13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7
14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목 차

15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16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3
17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0
1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6
19	「설화 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	139
20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145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필수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법령 적합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

- 1) 정부합동평가 대상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
(안 제1조·제2조)

가)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

나) 개정 조례 2건

-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행정과)
- (2)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농업기술센터)

2)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 삭제

(안 제3조·제4조)

가) 수수료 납부수단을 제한 ⇒ 납부수단 다양화 또는 해당규정 삭제

나) 개정 조례 2건

(1) 「거창군 수입증지조례」(재무과)

(2)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건설과)

나. 법제처 필수조례 정비

1) 정부합동평가 대상 필수조례 보완(안 제5조·제6조)

가)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1) 현행 : 특별교통수단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규정

(2) 신설 : 보행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특별교통수단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로 기능 대행 규정 명확화

나)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1) 위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전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만 인용하던 것을 위임 시행령·시행규칙을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6. 23. ~ 7. 1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민원인 권익보호 및 법령 적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 실적은 정부합동평가 지표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발굴 기획정비과제 및 법제처 법령위임 필수조례 등을 연내 개정·시행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 나. 상위법과의 일치 및 민원 편의를 개선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일괄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목록

조례명	규정내용(문제점)	정비방향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u>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자 비용부담 규정을 삭제해야 함
서북부경남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위탁협약 및 지정)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u>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u> ②(생략)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자 비용부담 규정을 삭제해야 함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3항의 허가수수료 납부 기준은 별표 3에 따르되 <u>군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u>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다양한 납부방법을 규정해야 함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u>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u> ②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다양한 납부방법을 규정해야 함

□ **법제처 필수조례**

법령명	법령위임 주요내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p>(제8조의3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은 지역별 보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p> <p>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에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p>② 지역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수당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함

3.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수당과 여비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1) 수당 :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2) 여비 :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의 출장 시 4급 공무원에 해당 하는 여비
 - 3)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경남도 특정감사 정비과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7. 27. ~ 8. 1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적극행정 실현 소극행정 경남도 특정감사 정비과제 사항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시험위원 등의 수당과 여비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임 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이 타당하며,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

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의무위반 시에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할 경우 그 반납 기준을 정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을 정함(안 제2조)
 - 1) 대상 :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거창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기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
- 3)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경남도 특정감사 정비과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2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7. 28. ~ 8. 1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적극행정 실현 소극행정 경남도 특정감사 정비과제 사항으로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훈련비 반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임 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교육훈련목적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을 준수하는 등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③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재(所在) 및 신상(身上), 교육훈련성적 또는 진도와 교육훈련결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즉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경비 외의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사직하려는 공무원은 귀국한 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복귀명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목적을 크게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제34조(복무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내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외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또는 휴직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진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4호·제5호·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소요경비의 산정) ①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조건의 위탁교육훈련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다만,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구분	기준	반납액
1. 제35조제1호·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35조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times \frac{1}{2}$
3. 제35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비고

-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text{추가반납액} = \text{소요경비} \times \frac{1}{2}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출향인의 범위와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의 재정지원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향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1) 현행 : 거창군 출신인 사람
 - 2) 변경 : 거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주소지를 두었던 사람
- 나.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정함(안 제3조)
- 다.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라. 출향인의 지위, 포상, 준용, 시행규칙 삭제(현행 제3조, 제6조~제8조)
 - 1) 법령 및 조례 중복·재기재에 불과한 불필요한 규정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본예산 41,88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7. 27. ~ 8.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출향인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의 대상, 범위, 방법을 규정하고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나. 향우회 교류 관련 사업이나 행사시 법에 저촉됨 없이 원활히 추진토록 하기 위함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문화체육 행사 보조금, 교류협력 행사 필요 경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제4조(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42	42	42	42	42	210

3. 관련 의견

전국향우연합회체육대회 시 보조금 지급 및 향우회 자녀 고향 방문사업 등 교류행사 시 식비, 숙박비, 버스임차료 등(행사 운영비)을 지급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모범 향우 감사패 제작: 6,380천원

나. 차량임차

1) 고향희망심기 고향방문(향우체육대회 등): 8,400천원

2) 지역향우회 정기총회 등 참석: 2,100천원

라. 향우 고향 문화탐방: 8,000천원

마 전국거창향우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17,00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이규섭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

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 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를 때 사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관련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군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거창경찰서에서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에 여성자율방범대를 추가 등록함에 따라 여성자율방범대를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율방범대에 여성자율방범대를 포함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나. 중복·재기재 규정 삭제(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800천원 추경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7. 27. ~ 8. 1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거창경찰서에서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에 여성자율방범대를 추가 등록함에 따라 여성자율방범대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나. 여성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봉사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에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여성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제2조(정의), 제4조(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행정과장 이규섭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
- 나.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5,000천원 추경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범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7. 27. ~ 8.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거창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창군 퇴직공무원
들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
조에 따라 지원대상인 거창군 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다. 지방행정동우회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
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저
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행정동우회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나. 관련 조문: 제2조(지원대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행정과장 이규섭

● 관련법령 발췌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 등) 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

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군청·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8. 24.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

나.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범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7. 27. ~ 8.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 15조에 따라 지원대상인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다. 거창재향경우회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치안 협력과 안전 사회 조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鄉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도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8. 24.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기준과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장학금 지급으로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함(안 제2조)

나. 읍면장 추천, 선발기준, 정원을 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장학금액, 지급, 지급정지 사유를 정함(안 제6조~제8조)

1) 금액 :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

2) 지급정지 : 이중 지급 제한, 이장신분 상실, 장학생의 퇴학 등

라.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규칙을 삭제함(현행 제9조·제10조)

- 1) 특별회계 : 「지방재정법」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5.28.개정) 제4조에 따라 이미 실효된 규정임
- 2) 규칙 : 「지방자치법」 제23조 중복·재기재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3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7. 27. ~ 8. 1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본 조례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정액 지급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 나.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중·고등학교 ⇒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확대하였고,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균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규정, 장학금액의 범위 규정,

지급정지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다. 검토결과 거창군이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 조문: 안 제6조제1항

나. 비용발생 요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연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3.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2021년도 이장 자녀 장학금 본예산 3백만원 확보

작성자: 행정과장 이규섭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5.28.개정)

제1조~제3조 (생략)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이하생략~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표준수수료) 규정을 정비·삭제하고,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요청에 따라 누락된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 정비함(안 제3조·별표 1)
 - 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명시된 수수료 삭제
- 나. 수수료 징수방법 확대함(안 제5조)
- 다.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7. 9. ~ 7. 2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전부반영

5. 검토의견

- 가.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전부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표준수수료 규정을 정비·삭제하고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 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 정비, 안 제5조에서는 수수료 징수 방법 확대, 안 제7조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보훈대상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개정 2021. 6. 8.>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삭제 <2021. 4. 6.>	
12. 삭제 <2021. 4. 6.>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7의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 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삭제 <2021. 4. 6.>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삭제 <2021. 4. 6.>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삭제 <2021. 4. 6.>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삭제 <2021. 4. 6.>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삭제 <2021. 4. 6.>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 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0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1건당 9,000원
104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4.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5.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6.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7.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8.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9.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0.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104의11.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1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3.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4.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6.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7.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8.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9.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20.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4의21.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2.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3.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	1건당 10,000원

경신고 수수료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 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 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 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 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에서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감면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되는 민원사항을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수수료를 감면하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비율 등(제11조제2항 관련)

번호	민원사항	수수료 감면비율 등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의 발급	100분의 100
2	「농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의 발급	100분의 100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그 등본·초본의 발급	100분의 100
4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의 열람 및 그 등본·초본의 발급	100분의 100
5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100원
6	「중자산업법」 제133조에 따른 보증중자 보증서의 발급	100분의 100(국문)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 허가증의 재발급	3,300원
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 신고증의 재발급	3,300원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의 재발급	3,300원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문증명의 발급	200원
11	「소방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구조·구급증명서의 발급	100분의 100
12	「기상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100분의 20
13	삭제 <2021. 6. 8.>	
14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100분의 100
15	「선원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증 발급	100분의 10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 표] <개정 2017. 12. 21.>

수 수 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협조

[경상남도 법무담당관-8221호(2020.8.28.)]

- 1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5359호(2020, 8. 28.)와 관련됩니다.
 2.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공무원 및 그 유족 등)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및 그 유족 등)가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도 포함**되어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드리오니, **관련 조례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 관련 설명자료 1부. 끝.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 관련 설명자료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또는 질병)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자(1급~7급)로, 생활편의를 위한 기본복지 혜택에서 장애인 수준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 급증
- **(필요성)** 병역의무가 있는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 신체적 희생을 입은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영역 강화는 당연한 책무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 수준 이상의 복지지원을 보장할 필요**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정의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12.7.1.)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조항 폐지***
 - * 예우법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폐지, 부칙(제19조)에 경과조치 명시
 - **(국가유공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대상유형 : 순직(전몰)군경, 전상(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대상유형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개편 법 시행 후에도 종전과 같이 지원 대상으로서 기득권 보호

* 대상유형 :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 협조 요청 사항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시,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추가

-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에 전달 및 적극 반영 협조

< 개정안 예시 1 - ○○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9. ~ 00. (생략)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조례명	규정내용(문제점)	정비방향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다양한 납부방법을 규정해야 함

□ 법제처 의견제시 15-0264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다시 규정해야 하는지

2. 이유

~생략~ 또한, 2012. 3. 21. 법률 제1139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9. 22.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에 따르면, 제13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금액대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 제정·개정이 없이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불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개정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취지로 보입니다.

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수수료 징수 규정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 징수 규정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수료 징수 규정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폐쇄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4. 2. 7. 회신 의견 14-0026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의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제3조의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택시관광 및 관광지 홍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등의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광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별표)
- 나.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정함(안 제4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7조
 - 2) 「관광진흥법」 제47조의4·제76조
-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3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7. 28. ~ 8. 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거창군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관광사업 및 지원기준에 거창투어 관광택시 운영을 추가하였고, 제4조의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다. 검토결과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객 유치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관광 택시 운영 등 관광사업 지원
- 나. 관련 조문: 제4조, 별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11	30	30	30	30	131

3. 관련 의견

거창군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및 거창투어 관광택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가.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10백만원
- 나. 관광택시운영 지원: 20백만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 관련법령 발췌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3.~13. (생략)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차. (생략)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제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자의 주차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며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수승대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치조례와 위임조례를 함께 규정함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주차장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
- 다. 퇴장 사유를 추가함(안 제6조)
- 라. 주차장 및 시설 이용료 변경함(안 별표 1)
- 마. 시설이용료 반환기준 변경함(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69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7. 28. ~ 8. 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수송대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에 관광지 인근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퇴장사유를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수송대관광지를 원활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

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0.> [시행일 : 2022. 2. 11.]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명예수당 대상자에게 효도권 이용비 및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참전명예수당 증액,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명예수당 대상자의 복지향상 지원사업 신설
(안 제7조의2·제7조의3)
 - 1) 효도권 지원사업: 목욕 및 이용·미용에 드는 비용 지원
 - 2)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비 지원
- 나. 명예수당 지급액 증액 및 지급대상 신설(안 제10조)
 - 1) 증액 :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 월 15만원
 - 2) 신설 :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월 10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국가보훈 기본법」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195,800천원(110,800천원 추경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7. 21. ~ 8.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라는 규정 아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예우를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수당 대상자 85세 이상인 분에게 목욕 및 이용·미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효도권 지원사업 신설, 명예수당 대상자에게 복지스마트워치 가입비 지원사업 신설,

명예수당 지급액 증액 및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효도권·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 2)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증액

나. 관련조문: 제7조의2·제7조의3·제10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군비	644,162	887,923	887,923	887,923	887,923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효도권 지원비용: 60,000천원
2.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비용: 25,000천원
3. 명예수당 증액: 110,800천원(제3회 추경예산 편성)
 - 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309,080천원
 - ⇒ 제3회 추경반영 금액: 100,000천원
 - 나. 전몰군경유족 및 미망인 명예수당: 138,000천원
 - ⇒ 제3회 추경반영 금액: 10,800천원
 - 다.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20,400천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관련법령 발췌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거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의 규모, 회원 수, 활동양상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거창군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2조)
 - 1)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와 읍·면분회 및 그 소속 경로당노인회
- 나.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3조)
- 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을 정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439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7. 28.~8. 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전부반영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를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내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로서

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정하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와 읍·면분회 및 그 소속 경로당노인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사업 지원

나. 관련 조문: 제2조(지원대상), 제3조(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439	450	450	450	450	2,239

※ 법령에 따른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사업은 제외

3. 관련 의견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를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대한노인회 거창군 지회 추진 사업 지원(16개사업): 439백만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관련법령 발췌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한 및 미흡한 절차를 개선하여 유족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영아 등 화장을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3조·제4조)
 - 1) 신설 :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 2) 삭제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다.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 사유 신설(안 제6조제5항)
- 라.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비함(안 제3조·제6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3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7. 28. ~ 8. 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별지 제1호·제3호서식)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유족 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을 추가(사산아 또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하였고,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하여 기한내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이 없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한 및 미흡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근거

가. 비용발생 요인: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그 연고자

나. 관련 근거: 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예외 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은 연 3백만원으로 연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행복나눔과장 이 호 현



관련법령 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 10.~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의 준공으로 공설공원묘지의 사용범위를 모든 군민으로 확대하여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설공원묘지 사용기준 정비(안 제3조)
 - 1) 신설 :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 사용범위 모든 군민으로 확대
-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에 따라 삭제(안 제10조·제11조)
 - 1) 권한위임 :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별표에 규정
 - 2) 시행규칙 : 「지방자치법」 제23조 중복·재기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7. 28. ~ 8. 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 준공으로 군민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사망자의 읍면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군민이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 10조 권한위임 조항은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별표에 위임사무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원활한 봉안당 사용과 공공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구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별표]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28개 사무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부서
1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복지정책과
2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3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4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신청 및 발급, 현황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5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신청·접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5의2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신청과 사용기간 연장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5의3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5의4	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5의5	유골반환 신청, 사용료와 관리비의 반환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설치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함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정함(안 제2조~제5조)
 - 1) 설치 및 위치, 업무 및 시설, 지원대상, 조직
- 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을 정함(안 제6조~제9조)
- 라. 위탁운영을 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289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7.30.~8.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거창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특성에 맞게 통합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치 및 위치, 업무 및 지원, 지원대상, 조직 등에 대하여 규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강가정 구현과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통합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며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하는 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라.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위탁 운영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제10조(위탁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289	293	296	300	303	1,481

가. 국도비·군비 53:47 매칭사업

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상승분은 연 1.2퍼센트 적용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02백만원
2.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59백만원
3.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14백만원
4.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지원: 12백만원
5.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 12백만원
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11백만원
7. 다문화가족 지원강화: 70백만원
8.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2.5백만원
9.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사업: 6.5백만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 관련법령 발췌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교구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청소년 보호·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호·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호·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24.>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제12조 관련)

1. 입지 조건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 수단 등이 구비되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재해방지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하며 접근이 편리한 위치여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 가. 사무실
 - 1) 4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 전용 별도 공간 확보
 - 2) 책상, 컴퓨터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구비
 - 나. 상담실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한 분리 또는 방음장치 설치
 - 다. 교육장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하는 별도 공간 확보
 - 라. 언어발달 교육을 위한 공간(언어발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전용공간 16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 확보
 - 2) 언어발달 교육에 적합한 설비 구비
 - 마. 비상재해대피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피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구비
3. 운영기준
 - 가. 운영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운영
 - 나. 관리규정

운영 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
다. 장부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의 작성·보존

- 1) 지원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2)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지원센터의 운영일지
- 4) 지원센터의 장 및 전문인력의 인사카드
- 5) 예산서 및 결산서
- 6) 총계정 원장(總計定 元帳) 및 수입·지출 보조부
- 7)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의
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
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
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
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
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머. (생략)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5.~7. (생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7호, 2011. 8.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농어촌 지역 등의 지역특성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략~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하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2.8.3>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제22조 관련)

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 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나. 인력기준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등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 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나. 인력기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현행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지역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1.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가족
2. 거창군민과 외국인과의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
3.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거창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경상남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군수는 거창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거창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1조(삭제 2015.9.23.)

제12조(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제13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군수는 군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서비스 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를 발간하여 배포 등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기본소양 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 ①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거창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언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15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①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내의 부부간 및 세대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자활지원) ①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제1호의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결혼이민자가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등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있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대한민국의 법률·의료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사실확인,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아동의 보육) ① 군수는 아동의 보육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본인과 결혼이민자 등의 부(父) 또는 모(母)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체류자격이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①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제20~제23조) (삭제 2015.9.23.)

제4장 보칙

제2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에 관한 심의 위원회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제21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군수는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학습 지원, 급식 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거창군청소년수련관 내)
- 나. 위탁범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 청소년수련관 2층 4개 공간(사무실 1, 교실 2, 창고 1)
- 다.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 직전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간)
- 라. 사 업 비 : 193,092천원 / 2021년 기준 (보조금 지원)

1) 여성가족부 지원 : 기 84,546(50%), 도 25,364(15%), 군 59,182(35%)

* 국비 보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2) 그 외 군비 지원 : 24,000천원 내외 추가(별도) 지원

마.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바. 위탁조건

1) 위탁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범위내 교부가능한 금액으로 함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준수 등

사. 신청자격

1)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비영리 청소년단체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

아. 선정기준

1) 선정방식 : 담당부서에서 구성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의

가) 구 성 : 6~9인(군 소속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나) 절 차 : 평가 및 심의 → 최종 1개 단체 선정·의결

※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점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

2) 평가기준

가) 수탁기관의 적격성(30점)

-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경영상태, 청소년관련사업 운영실적

나) 사업운영의 전문성·책임성(50점)

- 청소년 관련사업 전문성, 사업계획 타당성, 운영전담인력 전문성 등

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20점)

- 지역사회 공신력 제고방안,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등 방안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참조(방과후아카데미 현황 포함)

나. 관계법령

- 1)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2)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4) 「2021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2020.12. 여성가족부)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체험·학습·급식 등을 지원하는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 공백 방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나. 위탁의 내용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부합되는 등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탁월한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다. 내실있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임



관련법령 발췌

☐ 청소년기본법

-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후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군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①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수련 및 체험거리의 개발, 운영 및 보급
3.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4. 가족단위 및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운영사업
5. 청소년의 창작·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6.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7. 그 밖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수행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5조(운영)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2021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 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업자 지정) 지역현장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법인)의 사업 참여 참여 확대를 위해 설치 요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사업자 지정**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 운영시설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재부)

※ 수탁자 자격기준 : ‘청소년육성·보호·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 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자체별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1. 청소년 활동관련 업무 공무원, 2. 청소년활동에 관한 학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3. 청소년 상담복지 전문가, 4.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운영의 중단 및 종료) 운영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전년도 상반기 중에 지자체 및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야 하며, 당해연도에 운영 중단할 경우 지자체는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장소)을 확보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함

- (사업포기 기관에 대한 조치) 기존 운영기관이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부정수급금 환수 등 조치 신규 사업자 지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기존 참여자 및 지역내 돌봄수요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① 북상 병곡 ~ 동엽령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폐쇄된 동엽령 등산로를 2018년 남덕유산국립공원공단에서 정비하였으나 마을 반대(주차장 없음)로 인해 아직 미개방 상태임
- 주차장 조성을 바탕으로 한 등산객 유입 및 마을 활성화 등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토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임

2. 주요내용

가. 취득(또는 처분) 개요

- 위 치 : 북상면 병곡리 742-3 등 2필지
- 편입면적 : 5,145m²
- 소 유 자 : 2명(김*배, 이*길)

○ 사업비 : 1,300,000천원(토지매입 70,487천원/공시지가기준)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0.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m ²)	편입 (m ²)				
계				5,145	5,145	70,487			
취득	토지	북상 병곡 742-3	답	2,258	2,258	30,935	2022	북상 병곡~동엽령 등산로 주차장 조성	
취득	토지	북상 병곡 739-1	답	2,887	2,887	39,552	2022	북상 병곡~동엽령 등산로 주차장 조성	

※ 토지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다. 추진경과

- 2019. 8. : 재정지원사업 건의
- 2020. 3. : 관련 주민 민 이해관계인 면담
- 2021. 2. : 읍면순방 주민 건의

라. 향후계획

- 2021. 11. : 감정평가 실시
- 2021. 1. ~ 3. : 보상완료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2. 4. ~ 10. : 사업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주차장 등 인프라 시설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입 등
마을소득 증대 및 활성화에 기여

3. 관계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따로붙임

□ 현황사진



사진설명 : 북상면 병곡리 742-3



사진설명 : 북상면 병곡리 739-1

5. 검토의견

가. 북상 병곡~동엽령 등산로를 개방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차장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나. 외부 관광객 유입과 마을 활성화 등 주민숙원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검토됨

②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저수지 신설)

1. 제안이유

- 공익사업인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전 사업대상 토지를 협의 취득하여 저수지 조기 착공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위 치 :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377 등 47필지
- 취득물건 : 토지(47필지) A=34,529m²
- 사업기간 : 2018. 12. ~ 2025. 12.
- 사 업 비 : 7,200백만원
- 사업내용
 - 저수지 1개소(L=104.9m, H=22m), 양수장 1개소(L=300m)
 - 이설도로(농로) L=420m, B=4m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토지 가액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 목	면적	편입 예정면적	공사자가		
계					147,674	34,529		122,062,687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7	전	165	165	3,550	585,750	신영춘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6	전	793	793	3,550	2,815,150	신동민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산40	임	10,116	1,030	345	355,350	한화영외인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38	전	139	139	3,550	493,450	양치명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39	전	813	813	3,900	3,170,700	신현출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0	전	350	350	3,550	1,242,500	신현출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1	전	707	707	3,550	2,509,850	박석천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토지 가액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 목	면 적	편입 예정면적	공 차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2	전	433	433	3,740	1,619,420	신귀균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3	답	192	192	6,460	1,240,320	평산신씨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4	답	440	440	6,460	2,842,400	평산신씨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5	천	40	40	1,120	44,800	신삼권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4	답	311	311	6,460	2,009,060	신영식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5	답	820	820	6,460	5,297,200	신영식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6	답	936	936	6,460	6,046,560	신영식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32	답	1,160	1,160	5,360	6,217,600	평산신씨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30	전	383	383	3,550	1,359,650	신현준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33	답	2,955	575	3,610	2,075,750	신동구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29	전	76	76	3,550	269,800	신경철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28	전	2,102	2,102	3,550	7,462,100	신영철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7	답	916	916	6,460	5,917,360	신도철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31	답	1,332	1,332	5,360	7,139,520	신상옥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23	전	717	717	3,550	2,545,350	신동봉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22	답	846	846	6,460	5,465,160	신동윤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8	답	1,319	1,319	6,460	8,520,740	신동환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9	답	1,868	1,868	6,460	12,067,280	신동열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50	답	1,898	1,898	6,460	12,261,080	신상용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20	임	3,250	593	820	486,260	임준석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51	묘	370	370	2,010	743,700	양경운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99	답	595	595	6,460	3,843,700	신상용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800	전	496	496	3,550	1,760,800	신도철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산174	임	24,496	1,088	490	533,120	박원중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산177	임	17,653	5,521	516	2,848,836	평산신씨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산178	임	8,926	2,115	345	729,675	박현욱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산175	임	40,066	1,356	466	631,896	염철중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80-1	답	297	6.0	10,500	63,000	차석윤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442	답	401	5.0	8,040	40,200	신동권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82-1	도	218	2.0	1,910	3,820	계창근외 1인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82-2	묘	289	52.0	2,080	108,160	신도철외1인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69-7	도	33	33.0	1,350	44,550	신현수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69-6	도	30	9.0	1,350	12,150	신현수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0-4	도	63	63.0	1,350	85,050	진환계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0-3	도	79	27.0	1,350	36,450	신정식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산176	임	13431	890.0	710	631,900	차만규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1-2	답	2566	524.0	9,700	5,082,800	차석열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1-1	천	129	129.0	1,120	144,480	신동열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토지 가액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 목	면적	편입 예정면적	공차자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87	답	1886	114	9,360	1,067,040	신정식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8-1	답	573.0	180	8,840	1,591,200	신영춘

다. 추진경과

- 2018. 12. 25. : 비곡저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착수
- 2019. 8. 6. : 타당성조사용역 완료/와룡저수지 신설
- 2020. 2.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0. 3. 1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5. 18.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0. 10. 23.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낙동청→군)
- 2020. 11. 9.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 2020. 11. 1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서 제출(군→낙동청)
- 2021. 7. 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7. 7. :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최종)

라. 향후계획

- 2021. 8. : 보상토지조서 작성 등 보상계획 수립
- 2021. 9. : 감정평가
- 2021. 10. : 협의 보상 추진
- 2022. 2. :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 2022. 3. : 공사 착공
- 2025. 12. : 공사 준공

마.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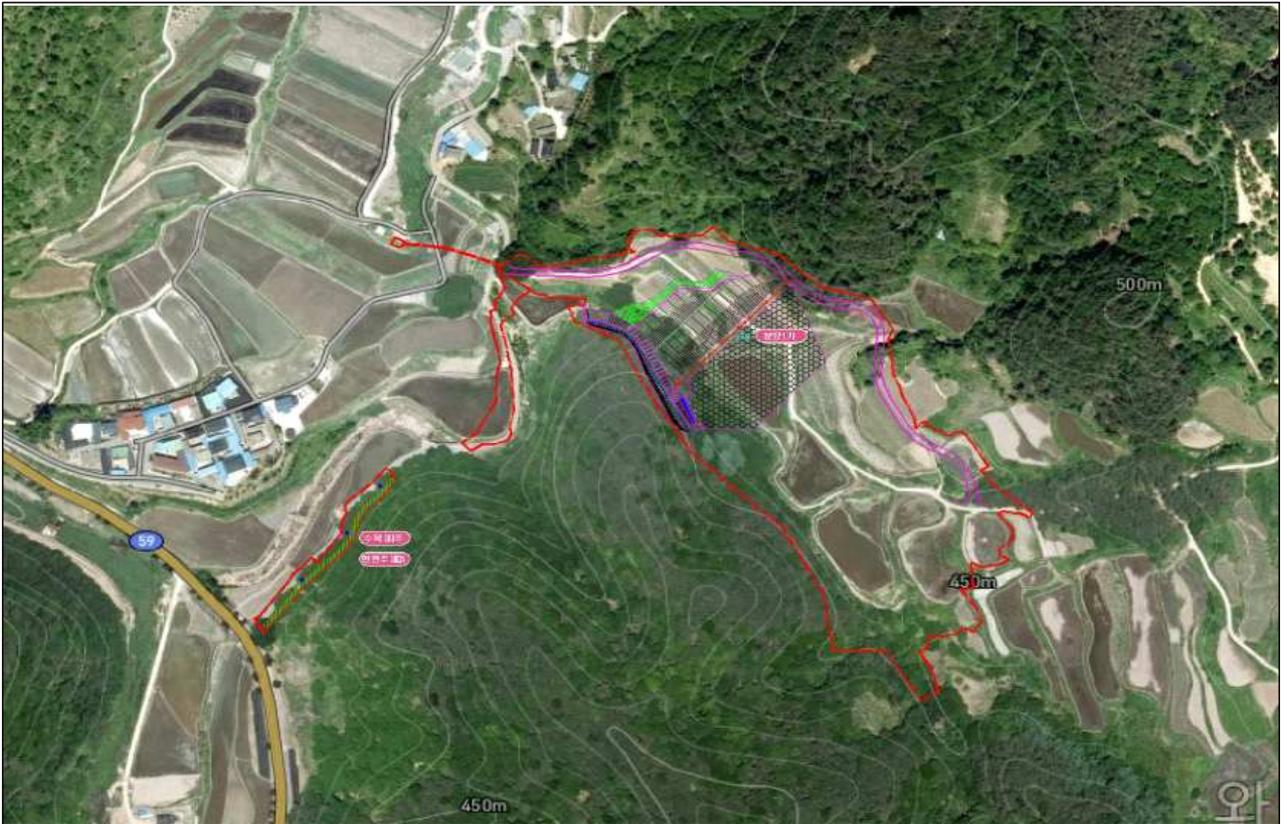
- 신원면 와룡리, 대현리 일원에 신규 저수지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작물 생산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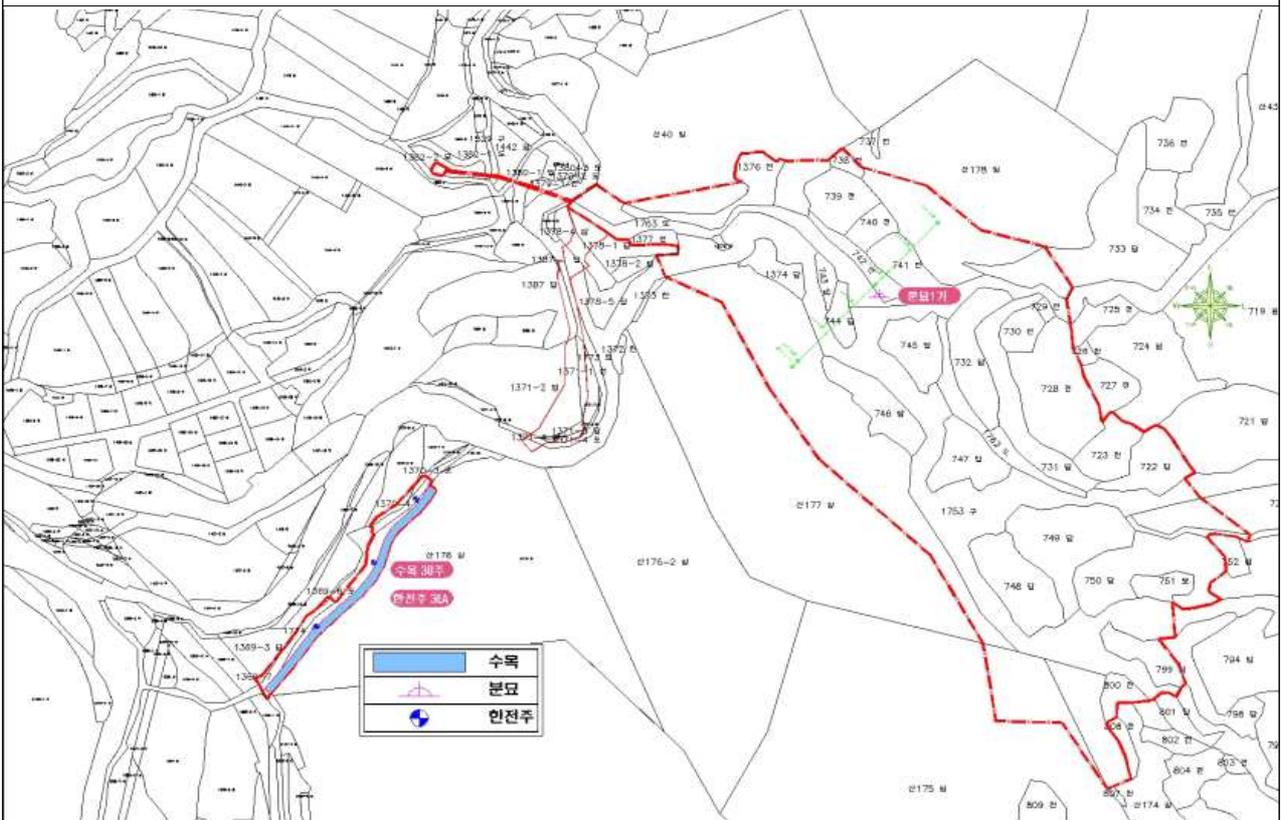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따로붙임

위치도 및 지적도



사진설명 :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377번지 등 47필지



사진설명 :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377번지 등 47필지

5. 검토의견

가. 신원면 와룡리, 대현리 일원에 공익사업인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사업대상 토지를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로 영농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③ 강남 배수지 신설 사업

1. 제안이유

- 강남지역 지방상수도 배수지 신설로 거창읍 송정리, 장팔리 일원 고지대 지역 수리적 안정성 확보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25년까지 마리면 소곡, 장백 일원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일원
- 취득물건 : 토지(3필지) A=2,208m²
- 사업내용
 - 사업명 : 강남배수지 신설사업
 - 사업내용 : 배수지 신설 800ton
 - 사업비 : 6,000백만원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토지가액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예정면적	공차지가		
계				7,810	2,208		46,769,200	
취득	토지	거창읍 장팔리 708-2	전	4,824	1,178	20,900	24,620,200	이명술
취득	토지	거창읍 장팔리 708-1	전	408	408	20,900	8,527,200	이명술
취득	토지	거창읍 장팔리 708-14	전	2,578	622	21,900	13,621,800	이명술

다. 추진경과

- 2021. 3. :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착수
- 2021. 6. :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환경부 승인

라. 향후계획

- 2021. 10. : 용역 준공 및 실시계획인가
- 2022. 1. : 공사 착공
- 2023. 12. : 공사 준공

마. 기대효과

- 거창지방상수도 수리적 안정성 확보 및 장래 각종 개발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깨끗한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및 생활환경 개선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따로붙임

5. 검토의견

가. 거창읍 송정리, 장팔리 일원 고지대 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배수지 신설을 위한 장팔리 일원 토지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나. 배수지 신설로 거창지방상수도 수리적 안정성 확보 및 장래 각종 개발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 발전 도모와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됨

4] 거창 배수지 증설 사업

1. 제안이유

-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2035년 용수수요량에 대비하여 배수지 시설용량을 증설하고자 함

※ 현재 7,366m³ ⇒ 필요 10,366m³ (증설3,000m³)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일원
- 취득물건 : 토지(7필지) A=6,183m², 건물(1동) A=65.49m²
- 사업내용 : 거창배수지 증설 3,000ton
 - 사업명 : 거창배수지 증설사업
 - 사업내용 : 배수지 증설 3,000ton
 - 사업비 : 4,000백만원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 m², 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토지가액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예정면적	공시지가		
계					6,248.49	6,248.49		116,019,400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458-1	과수원	413.00	413.00	16,500	6,814,500	이영지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458-2	잡종지	217.00	217.00	28,600	6,206,200	이영지
취득	건물	거창읍 양평리 458-2	주택	65.49	65.49	20,000,000	20,000,000	이영지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458-4	과수원	556.00	556.00	14,000	7,784,000	이영지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458-7	도로	72.00	72.00	6,850	493,200	이영지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458-14	과수원	652.00	652.00	10,400	6,780,800	이영지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458-16	잡종지	162.00	162.00	15,900	2,575,800	이영지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458-17	임야	4,111.00	4,111.00	15,900	65,364,900	이영지

다. 추진경과

- 2021. 3. :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착수
- 2021. 6. :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환경부 승인

라. 향후계획

- 2021. 10. : 용역 준공 및 실시계획인가
- 2022. 1. : 공사 착공
- 2023. 12. : 공사 준공

마. 기대효과

- 배수지 용량 증설에 따른 체류시간(12시간 이상) 확보로 정수장과 송수계통 사고 및 수질사고 등 비상시에도 수요자에게 단수 없이 수돗물을 급수할 수 있는 공급의 안정성 확보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따로붙임

5. 검토의견

가.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2035년 용수수요량에 대비하여 배수지 시설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거창읍 양평리 일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배수지 용량 증설로 비상시에도 단수없이 수돗물을 급수할 수 있는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 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설화 구전관 」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사업인 「신라촌 조성을 통한 마을콘텐츠 구축」 사업으로 조성한 설화 구전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설화 구전관
- 나. 위치 : 거창읍 가지리 1433외 1필지
- 다. 주요시설 (m²)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부대시설	비고
3,212	381.58	253.18	지상 2층	주민창의마당 주차장, 벽화거리 등	

라. 위탁대상 사무

- 설화 구전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작은 도서관(63㎡), 북카페(80.5㎡), 다목적홀(63㎡), 벽화거리, 주민창의마당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설화 구전관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관리

마.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

바. 수탁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국경마을 신라촌

사. 선정방법 : 수의계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3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의5

나. 그간 추진현황

- 설화 구전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 2021. 7.

다. 향후계획

- 수탁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1. 11.
- 위·수탁계약 체결 : 2021. 12월초

라.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가. 본 동의안은 신라촌 조성을 통한 마을콘텐츠 구축사업으로 조성한 설화구전관 준공에 따른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나. 위탁의 내용은 설화구전관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되며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단체는 영농조합법인 국경마을 신라촌으로 농산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설화 구전관을 시설관리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 다.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위탁 관리·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임



관련법령 발췌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반사업,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운영)

-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 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거창군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 나. 사업량 : 목욕차량 1대, 이용자와 차량 운행 관리
- 다. 위탁대상 사무
 - 목욕차량 위탁운영(1대)
 -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
 - 목욕차량 이용자 선정 등 관리

라. 그간 운영상황

- 위탁기관 : 거창군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 위탁기간 : 2019. 3. 1. ~ 2021. 12. 31.
- 위탁차량

차 종	규 격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이동목욕차	내장탑차	99부4930	2021	

※ 2021. 7. 차량 교체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유

-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을 받지 못하는 불편 어르신들에게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위생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욕 차량의 운영이 필요함
- 매년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98%이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이용자에게 원활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에 따른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민간 위탁운영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다. 향후일정

- 민간위탁 기관 재지정
 - 위탁기관 : 거창군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관장 김인)
 - 위탁기간 : 2년(2022. 1. 1. ~ 2023. 12. 31.)

- 위탁내용 : 목욕차량(1대) 운행서비스 사무업무·관리 등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34,000천원

마. 위탁운영 계획안 :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해 운영중인 거창군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나. 위탁의 내용은 이동목욕차량(1대) 운행서비스와 사무업무 관리 등에 대한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부합되고 위탁기간은 2년이며 수탁기관은 거창군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임

● 관련법령 발췌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5, 2012.8.3, 2019.6.12, 2020.1.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2020.1.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2020.1.3>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2020.1.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1.3>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8.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2019.6.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8.3>]